

**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
전부개정조례안**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외과에게 『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』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, 논문제출 및 심사 등이 형식적임에 따라 이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근무실태 및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급대상(안 제2조)

- 공중보건외과를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

나. 지급의 한도(안 제4조)

- 임상연구비는 과제 1건당 300만원이내
-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

다. 진료활동장려금 가산지급 규정(안 제5조)

- 장려금 지급 시 환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에 따라 가산지급 할 수 있는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 계 법 령 : 붙임

나. 예 산 조 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관 계 부 서 승 인 : 해당없음

라. 입 법 예 고 : 2012. 3. 16 ~ 4. 5 (20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.

마.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 : 해당없음

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① 임상연구비(이하 "연구비"라 한다)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(공중보건의사 제외) 및 약사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진료활동장려금(이하 "장려금"이라 한다)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창군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로 한다.

제3조(연구계획서의 제출) 연구비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계획서를 평창군 보건의료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
2. 연구과제
3. 연구내용
4. 연구의 완성 예정일
5. 연구비의 소요명세
6.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

7. 그 밖의 참고사항

제4조(지급의 한도) ① 연구비는 과제 1건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. 단,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건의 과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연구자가 매 회계연도 중 1건 이상의 과제 연구비를 요청할 경우 해당연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방법)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심사하여 원장이 지급하되 부득이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.

②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장려금은 환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 등에 따라 가산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월 한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연구비의 사용)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 자료 수집 및 교재 구입비, 활동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) 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외 사용한 경우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)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연구비 및 장려금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평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
연락처	(033) 330 - 4820

관계법령 발췌

□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

- ① 제11조(보수등) 공중보건 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.

□ 「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」 중 6. 공중보건 의사의 보수

- ① 공중보건 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비(명절휴가비)외의 기타보수,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, 기타 수당, 보육수당, 복리후생비(맞춤형복지제도) 등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중보건 의사가 근무하는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.